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최광옥 의원외 6인

(최광옥, 강태원, 최미애, 권광택, 이영복, 김법기, 이규완)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7일
-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도의회에 「교육위원회」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간 위원수·직무·소관부서를 조정하고,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·직무·소관부서 재 조정(안 제2·3조)
- 교육·학예업무를 전담 심사·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신설(안 제3조)
- 교육의원이 의장된 경우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단서 신설(안 제4조)
- 교육위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단서 신설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최광옥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

-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정수 확보와
- 이와 관련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등 제규정의 정비
- 교육위원회의 안건,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·자료에 대한 승계
- 회의실, 사무실, 사무기기 등의 확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